
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3. 1. 3.



국토교통부

순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추진성과와 평가 | 1 |
| II . 주요 업무 추진계획 | 3 |
| ①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인프라 확충 .. | 4 |
| ②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| 9 |
| ③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.. | 15 |
| ④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| 19 |
| ⑤ 안전하고,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 | 23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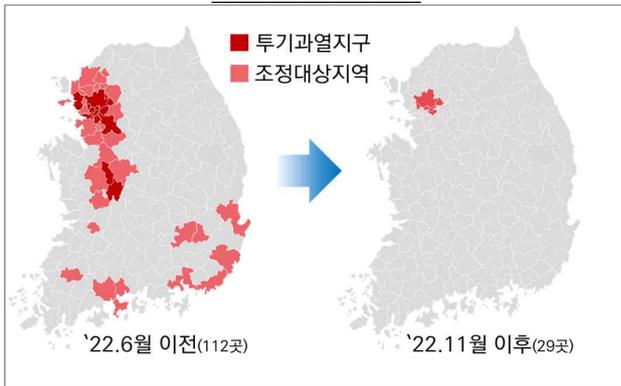
I. 추진성과와 평가

1 주요 정책 성과

□ (주거안정)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취약계층·서민 지원 강화

- ▲규제지역 해제, ▲공시가격 현실화율 '20년 수준 환원, ▲재건축 규제 개선(재초환·안전진단 개선) 등 부동산 정책 정상화
- 민간 주도 270만호 공급계획(8.16)을 통해 임기내 공급 청사진 마련
-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(10.26)으로 수요에 맞는 공급기반 마련

규제지역 추이



주택공급 계획('22.8.16)

| (만호) | '18~'22 | '23~'27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합계 | 257 | 270 |
| 지역별 | | |
| 수도권 | 129 | 158 |
| 서울 | 32 | 50 |
| 비수도권 | 128 | 112 |
| 주요 유형별 | | |
| 정비사업 등 | 41 | 52 |
| 공공택지 등 | 64 | 88 |
| 기타 | 151 | 130 |

-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*(7.20)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 노력

*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동결 연장, 전세대출 금리 동결, 주거급여 확대 등

-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·충간소음·관리비 등 고질적 주거문제를 정책 어젠다로 삼고, 적극 대응

□ (이동혁신)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지속 완화하고, 교통안전 제고

- 심야 택시난 대책*(10.4), 겨울철 대폭 증편을 통한 국제항공노선 회복(50%, '22.12) 등 거리두기 완화 후 증가한 이동 수요에 적극 대응

* 심야 배차성공률(월~일, 22~03시) : (7/2주) 23% → (10/3주) 38% → (11/3주) 46%

- GTX-A노선 차량 출고 및 수서-동탄 터널 관통(12월) 등 개통 조기화

-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대 최저('21.1~10월 2,362명 → '22.1~10월 2,242명)
- 광역버스 증차 등을 통해 입석 대폭 감소('22.6월 7.2천 → '22.11월 1.5천)
- (공간혁신) 지역 교통망 확충 등 균형발전 추진과 함께 도심환경 개선
 - 춘천~속초 철도 착공(10.18), 간선도로망 개통* 등 지역 이동 격차 해소
 - * 고속도로 2개(광주외곽, 경부선 동이-옥천 등), 국도·국지도 17개(흥해우회 등) 개통
 - 행복도시 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근거 마련('22.6) 등 거점 육성
 - 국민들께 대통령실 남측 용산공원부지 시범개방('22.6, 총 2.2만명 방문)
- (경제제도약) 규제완화,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산업질서 확립 등 민간 중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, 대규모 해외 수주 여건 조성
 -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를 통해 총 117건* 규제개선 의결
 - * 전원 민간으로 구성, '21년 대비 건의과제 수용률 2배 이상 ↑ ('21. 10% → '22.下 28%)
 -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정 대응하여 법치주의 확립
 - 원팀코리아 사우디 방문(11.4~9)과 연이은 왕세자 방한(11.17) 및 공동 주택포럼 개최(11.28~30) 등 한-사우디 협력 공고화(MOU 26건, 40조원 규모)

2 개선 필요사항

- 지역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 이탈 심화, 성장동력 감소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, 수도권과의 격차*도 심화
 - * (비수도권 GRDP 비중, %) '10년 51% → '15년 49.9% → '17년 48.7% → '21년 47.2%
- 고금리·경기둔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면밀한 대응 필요
-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,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
 - 지입제 등 물류시장 근본적 개선 및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필요
- 열차 탈선사고('22년 3차례), 혼잡 문제 등 안전 위협 요인 여전

II. 주요업무 추진계획

정책
비전

멈추지 않는 혁신과 성장의 엔진, 국토교통부

방향

균형 발전 / 민생 안정 / 경제 재도약 / 국민안전

주요
정책
과제

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

-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 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
- 지역 주도 혁신 성장 공간 조성
- 지역 교통망 확충

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

-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기반 강화
-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
- 시장원리에 부합하고,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

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

-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
-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
-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

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

-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 질서 확립
-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
-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

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

-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
- 건설·시설물 안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
- 생활친화형 인프라 조성

(1)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

- ◆ “지역 주도-정부 뒷받침”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해 **과감한 규제혁신** 등을 추진하여 지역에 자유를 확대
 -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**혁신 성장공간 조성** 등을 추진하고, 어디에 살든 **공정한 접근**을 보장하기 위한 **교통망 확충**

1]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 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

- (**GB 규제개선**)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 (30만㎡ 이하→100만㎡ 미만)하여 지역의 **GB 활용도** 제고(시행령 개정, '23.上)
 - 반도체·방산·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**GB 해제총량**에서 제외
 - GB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 필요지역을 철저히 관리*, GB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 강화 등 질서있는 개발 유도
 - * 드론·항공영상 활용 불법행위 모니터링, 훼손지역 우선 복원지역 지정 등
 - 지역여건이 감안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, 해제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*
 - * (현행) 국토부 협의만으로 판단 → (개선) 중도위 사전심사반 신설·운영
- (**도시계획**) 주거·업무·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하게 개편('23.上)
 - 토지의 용도·밀도에 대해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**공간혁신구역*** 도입
 - * 토지의 용도·밀도 등 도시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가능한 도시혁신구역, 용도지역 변경 없이 허용 건축물 용도를 다양화하는 복합용도구역
- (**토지수용**)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서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도록 **공익성 협의 권한**을 이양(중토위 → 지토위)
- (**거버넌스**) 지역과 함께 광역권별 지원전략, 인프라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「지역균형발전지원단」 운영 본격화('23.1~)

②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

①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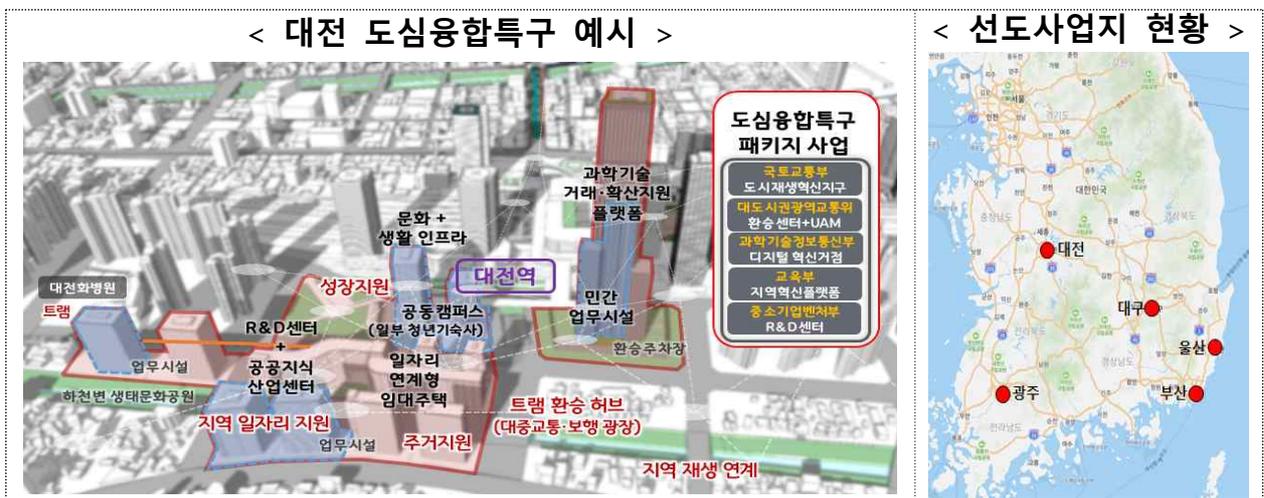
- (도심융합특구) 기업·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이 육성 되도록 기업공간·디지털인프라, 금융·R&D 등 범부처 패키지* 제공

* 디지털 인프라(과기부), 펀드·금융(중기부), R&D(산업·과기·중기부) 등 협업방안 마련('23.12)

- 법인·소득세 등 세제혜택,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*하고, 산업특화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특례 부여도 검토**

*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법 제정('23.上), 선도사업 기본계획 수립('23.12)

**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와 연계해 인센티브 부여(균형위원회 등과 협업)



- (국가산단) 소형모듈원전, 원자력수소생산, 나노·반도체,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 신규 조성

- 미래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지원(R&D, 규제자유특구 등)도 병행해 지역산업 육성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

- 기존보다 2배 이상 조성(10개 이상)하고, 후보지 발표 前 관계기관 협의(GB·농지 등)를 완료하는 등 추진기간 대폭 단축(1/3 단축)

- 기업수요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기업과 지역·중앙정부가 함께 전담 지원팀 구성

- 기존 노후산단은 고밀·복합개발하여 첨단산업에 맞게 리뉴얼 할 수 있도록 활성화구역 선정('23.1분기, 2곳)

② 기존거점 고도화

- (공공기관 2차이전) 1차이전 성과 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·입지원칙 등을 담은 '공공기관 2차이전 기본계획' 수립('23.上)
 -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 착수('23.下)
- (행복도시)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(기본계획 수립, '23.上)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(행복도시계획 개편, '23.下)해 행정수도기능 제고
- (새만금) 세제혜택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도입·지정('23.8)하고, 첫 도시인 수변도시 매립공사 준공('23.6)
 - 남북도로('23.7 준공), 지역 간 연결도로('23.下 발주) 등도 차질없이 추진

③ 지역주도 맞춤형 新성장거점 조성

- (일자리거점)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 연구역량과 청년인재를 활용하는 캠퍼스 내 산단·창업공간 조성(캠퍼스 혁신파크 선정, 2개소)
 - 도심 내 기업입지 조성을 위해 기업혁신파크를 도입하고, 이를 위한 규제특례 등을 담은 기업도시법 개정('23.下) 및 선도사업지 선정(2개소)
 - 역세권 등에 지방특성(산단, 관광 등)을 반영한 주거·산업·문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투자선도지구 확대('23년 4곳 이상 선정)
- (지역정착거점) 은퇴자·귀농귀촌자 등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·돌봄·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활력타운 조성('23.上, 7곳 선정)



- (주거) 타운하우스(고령친화설계, 제로 에너지) 형태로 분양·임대주택 공급
- (서비스) 생활 인프라(국토부) + 돌봄(복지부)·여가(행안부)·체육(문체부) 서비스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
- (일자리) 마을기업, 재능기부 등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지역사회에 기여

- (생활인구 기반 지원) 정주인구 외에 관광·산업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을 도입('23.上)

*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구 유출입 원인 분석 및 맞춤형 지원방안 검토('23.12)

④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국토 경쟁력 제고

- (철도 지하화) 상부 구도심 공간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, 단절된 지역 복원을 위해 특별법 발의('23.上) 및 후속절차 추진*

* 법정 종합계획 수립 착수('23.下) → 경부·경인선 등 대상노선별 사업화 검토('24~)

- (지하고속도로) 임기 내 경인 착공('27.上), 경부 설계완료('27.上), 수도권1순환선 설계 착수 등을 목표로 사전 절차 신속 진행

* (경인, 인천~서울) 예타('22.5~, 1년) → 타당성 평가(1년) → 설계(2년) → 착공('27.上)
 (경부, 기흥~양재) 예타('23.1~, 1년) → 타당성 평가(1년) → 설계(2년) → 착공('27.下)
 (1순환, 퇴계원~판교) 예타 신청('23.下) → 예타 → 타당성 평가 → 설계 → 착공('29)

- (환승센터) 삼성역('21.6 착공) 등 주요 교통거점에 계획된 지하 환승센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, 복합개발 추진 등을 위한 포럼 발족('23.6)

- (기반마련) 대학교·유원지·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 지상·지하공간에 쇼핑몰·전시장 등이 복합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('23.上, 국토계획법 개정)

- 대심도 터널 기술(TBM) 국산화 및 해외진출 등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('23.3) 및 R&D 기획연구 추진

③ 지역 교통망 확충

- (철도) 지방권 광역철도 적기 추진하고, 간선망도 지속 확충

- (광역철도) 지방 권역별 5대 선도사업*은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 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

* 부산~양산~울산, 광주~나주, 대구~경북, 대전~세종~충북, 용문~홍천

- 대구권 광역철도(구미~경산) 개통('24)을 위한 공정관리 철저, 동남권 순환철도 완성을 위한 김해진영~울산 광역철도 사타 완료('23.下)

- (간선망) 수서발 고속열차를 경전·전라·동해선으로 확대 운행('23.下)
 - 평택~오송 구간 선로용량 증대를 위한 2복선화사업 착공('23.上),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사업*도 적극 추진
 - * 인천발·수원발 KTX, 호남고속철도(광주송정~목포), 경부고속선-서해선 연결
- (5차망) 주요 간선·광역망 확충, GTX 연장·신설 등 국정과제 적기 이행을 위한 5차망 구축계획('26~'35) 수립 조기 착수
 - * 4차망('21년 고시) 착수시기('19.7)를 고려 시 5차망 착수시기를 1년 이상 단축
- (민자) 보다 촘촘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민간제안 부담 완화, 사업성 제고, 역세권 개발(콤팩트 시티) 등 철도투자 혁신방안 마련('23.1분기)
- (도로) 3개 고속도로, 20개 국도 개통, 민자 고속도로 지속 확충 등 격자형·방사형 순환 국가간선도로망($10 \times 10 + 6R^2$) 구축 추진
 - (격자형) 아산-천안 고속도로 개통, 고속도로 건설계획 상 미착수 주요구간(영월-삼척 등) 예타 착수, 청도-밀양 등 국도 적기 개통
 - (방사형) 대도시 중심에서 주변 거점과 직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주변 순환 도로망 건설(5월: 상패-청산^{국도}, 12월: 화도-양평^{고속}, 포천-화도^{고속} 개통)
 - (민자) 서부내륙 등 건설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, 착공 이전 사업(오산-용인/서창-김포 등)은 절차 조속 이행
- (공항) 신공항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, 지방공항 운영 내실화
 -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 및 조기 보상 추진('23.下), 대구·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타완료(~'23.上)
 - 제주2공항은 도민 의견 수렴하며 후속절차 이행, 울릉('23 공정률 43%, '25 완공), 백령(기본계획 수립착수, '23.上) 등 도서공항 건설도 지속 추진
 -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發 국제노선 신규 발굴('23.上), 공항 운영·건설에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 마련('23.6)

(2)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

◆ 집값 급등기 도입된 **과도한 규제**를 **정상화**하고, **부동산 시장 연착륙**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도모

○ **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**로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

①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

- (**규제지역**)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
- (**전매제한**)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·완화(‘23.3 「주택법시행령」 개정)
 - (**수도권**) 현행 최대 10년* → 최대 3년**으로 완화
 - *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, 규제지역 여부, 분양가 수준별 6개월~10년 적용중
 - **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, 과밀억제권역 1년, 그 외 6개월
 - (**비수도권**) 현행 최대 4년 → 최대 1년*으로 완화
 - *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, 광역시(도시지역) 6개월, 그 외 폐지
- (**실거주 의무**)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(‘21.2~)되는 실거주 의무(2~5년) 폐지(「주택법」 개정안 발의)
- (**중도금 대출**)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(현행 12억원)을 폐지하여, 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(‘23.1분기)
- (**특별공급 기준**)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(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) 폐지,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허용(‘23.2)
- (**청약 제도 합리화**) 청약당첨된 1주택자*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(‘23.上),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(‘23.2)

* 현재 규제지역, 수도권,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25%는 1주택자도 당첨가능

** '18.12월 이전에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없음, '21.5월 이전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신청가능

②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

① 주택건설 사업 자금조달 등 지원

- (PF대출 보증) 건설사업 단계별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기관(HUG)의 보증공급 신설 및 확대 추진
 - (착공 전) 우량 사업장에 원활한 본PF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금리 자율화 등 제도개선과 보증확대('23년 10조원, '23.1)
 - (착공 후) 만기가 짧은 PF-ABCP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한 경우 만기가 긴 대출(loan)로 전환할 수 있도록 HUG가 보증('23.1)
 - * 예시: HUG 보증을 통해 기존 PF대출(대출 30%, ABCP 70%)을 신규 대출 100%로 전환
 - (준공 전) 미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부족이 자금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분양 PF 보증 신설(5조원, '23.1)
- (분양→임대 전환 지원) 분양 사업을 임대 사업으로 전환 희망하는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*(10년 임대 후 처분 조건) 전환 지원(공모)
 - * 기금 출·용자, PF대출 기금보증 지원 → '23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공모시 수요조사를 통해 분양→임대 전환 별도 공모

② 주택공급 기반 확충

- (정비사업 활성화)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*을 완료하고, '23년 중 신규 정비구역 4.8만호 지정 추진
 - * 안전진단기준 개정('23.1), 재초환법 개정('23.上), 통합심의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('23.上)
- (도심복합)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('23.下, 도심복합법 제정)하고,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 발굴·선정 지원
 - 공공시행 사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신규 후보지 발굴 및 기존 후보지 지구지정*(1만호) 추진
 - * 기 지구 지정된 9곳 1.5만호는 설계공모, 시공사 선정 등 사업계획 승인 절차 착수
- (소규모 정비) 사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,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
 - * 소규모재개발 현금청산규정 완화,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확대(50→75%) 등

- (공공택지)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하고, 既 발표 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 또는 지구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

지구별 '23년 주요계획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남양주왕숙 (6.6만호) | 인천계양 (1.7만호) | 하남교산 (3.3만호) | 부천대장 (1.9만호) | 고양창릉 (3.6만호) | 광명시흥 (7.0만호) | 의왕군포 (4.1만호) | 화성진안 (2.9만호) | 김포한강2 (4.6만호) |
| 부지착공 (23.6) | 본청약 (23.10) | 부지착공 (23.6) | 부지착공 (23.6) | 부지착공 (23.6) | 지구계획 신청(23.11) | 지구지정 (23.3) | 지구지정 (23.10) | 지구지정 (23.12) |

*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등 신규택지는 시장상황을 감안하며 지속 발굴

- (1기 신도시) 준비를 위한 추진체계, 이주대책, 특례 등 지원사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(23.2)하고, 조속한 통과를 역점 추진
 - 준비기본방침(국토부, '22.11~)과 준비기본계획(지자체, '23.1~)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 협력, 신속한 준비를 위한 추진 기반 조성
 - 신도시별 총괄기획가, 국토부-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공청회·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 추진

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

◆ 공공주택(공공분양+공공임대) 100만호를 통해 집 없는 사람은 부담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,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완성

지난 5년('18~'22)

향후 5년('23~'27)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공공임대 63.2만호 (저소득 취약계층 74%) | 공공분양 14.4만호 | → | 공공임대 50만호 (저소득 취약계층 86%) | 공공분양 50만호 |
| 총 77.6만호 | | | 총 100만호 | |

* 공급계획은 필요시 탄력적으로 공급

-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,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해 주거선택권 강화

1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

- (공공분양) 공공분양주택(나눔·선택·일반형) 새 브랜드로 '뉴:홈'* 선정

* '첫집', '새 주거문화', '희망시작'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, 국민제안 선호도조사(22.11)를 통해 선정

- 뉴:홈('23~'27 총 50만호) 공급을 위해 '23년부터 공공택지, 도심 등 우수입지에서 지구계획 변경, 인허가 등 추진
- '23년 총 7천호 사전청약(7·12월) 공고를 통해 조기공급 ('22.12월 공고분 2,298호는 '23.2월부터 접수시작)

- (공공임대) 수도권(7.5만호 이상) 등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신규 공공임대 총 10.7만호(통합건설 3.5만, 매입 3.5만, 전세 3.7만) 공급 추진
 - 공공임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*하는 방안 시범 도입
 - * '23년 시범사업(신축: 과천시식정보타운, 남양주별내, 기축 : 서울강남3, 도봉) 후 확대 추진
 - 공공분양+공공임대 혼합 배치, 민간분양+공공임대 혼합 조건부 택지 매각도 확대하여 소셜믹스 적극 유도
 - 공급면적을 확대*하고, 빌트인 품목 및 마감재 개선 항목 확대,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품질 개선
 - * 3기 신도시 승인물량은 57→67m²(공급면적), 미착공 행복주택은 14→20m²(전용면적) 등
 - 고령자(무장애 설계 등, 1천호), 청년(일자리 연계, 4천호),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, 의료, 복지서비스 등 특화 임대주택 공급
- (주거안전망) 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, 긴급주거지원* 및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연계 지원
 - * 現 재해·재난 이재민 한해 지원(최대 2년) → 경제적 위기가구 추가 검토
 -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(표준메뉴얼 마련)로 취약계층 선제 지원, 영구임대 내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(15→111곳)로 맞춤형 서비스* 제공
 - * 독거노인, 정신위기가구 등에 맞춤형 상담·안내, 돌봄서비스 등 제공
 - 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미수급자를 발굴하고,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('22, 중위 46%^{135만} → '23, 47%^{146만} → '27, 50%^{175만가구})
 - 전국 장애인 가구에 안전손잡이·단차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

② 세입자 및 서민·취약차주 보호

- (전세사기) 악질적 전세사기에 대응해 「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」('22.12.30 구성)을 통한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 집중

- **(피해예방)** 안심전세 앱* 배포('23.1), 자가진단 체크리스트·영상 제작·배포, 홍보부스(취업·웨딩박람회 등) 등을 통해 위험계약 예방
 - * 전세계약 체크리스트, 시세정보(매월 업데이트),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 등
- 임차인의 정보확인 권리강화*,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권한 부여**(시범사업, '23.1) 등 제도개선도 병행
 - *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, 납세증명서 확인 가능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)
 - ** 전입신고 효력발생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을 방지
- **(피해지원)** 「합동 법률지원 TF」(국토부-법무부)를 통해 HUG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 단축, 무료 법률·금융 상담지원 등 확대
 - 전세피해 지원센터 추가 설치('23.1), 주택도시기금 1%대 긴급 지원 대출* 착수('23.1~) 및 임시거처 확대(28개소→100개소)
 - * (대출한도) 가구당 1.6억원, (금리) 연 1% 수준, (기간) 최대 10년 등
- **(집중 수사)**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2월 중 발표, 경찰청과 상시 공조체계 유지,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분석하여 추가 수사 의뢰
- **(서민·취약차주 보호)**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대상*을 확대('23.1) 하고, 시중 전세대출 이용자의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** 허용('23.2)
 - * (당초) 실직·휴직·폐업 → (확대) 소득 20% 이상 감소, 질병·상해, 재난피해 등
 - **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 재계약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전액 대환(금리 1.2~2.4%) 허용
- **생애최초·신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대출한도 확대***(‘23.1)
 - * 생애최초 2.5억 → 3억원, 신혼부부 2.7억 → 4억
- **(민간등록임대)** 서민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등록임대 정상화* 제도화(민임법 개정안 조속 발의)
 - * 아파트(85㎡이하) 장기 임대등록 허용, 최소 등록호수(2호) 기준 신설, 장기(15년) 유형 신설 등
- **(임대차법)** 연구용역(~'23.9)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임대차2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, 관계부처 및 사회적 합의 추진

④ 시장원리에 부합하고,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

- (규제지역)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
- (부동산 공시)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* 마련('23.下)
 - * 지자체 역할 확대, 산정체제(표준-개별 방식) 개선, 주기 및 시점 변경 등 종합 검토
 - '24년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마련('23.下)
- (LH 혁신) 토지개발→주택공급→주거복지 기능을 종합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, 투명성·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
 - LH 발주 계약 투명화, 투기 예방·적발 체계 강화 등 통제장치 강화
 - * LH 퇴직 법무/감평사와 수의계약 제한 강화(2→5년) 및 재취업 신고 도입(내규개정, '23.上), LH직원 가족/사업지구 인근지역도 부동산 거래 조사(LH법 개정안 발의, '23.上)
 - 투기 감시를 위해 도입한 '준법감시관'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취업·계약 업무 감시(LH법안 발의, '23.上), LH 감사실장 직위 개방('23.上)
 - 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LH 기능 폐지·축소, 지역조직 슬림화 등을 통해 정원 감축, 조직 효율화('23.上)
 - 임금피크제 기간 단축, 평가를 통한 급여 차등으로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, 사내대학·부속연구원은 근본적 운영 개선안* 마련('23.上)
 - * (사내대학) 폐지, 대학 아웃소싱 등, (연구원) 자체수입 확대, 정책기여도 제고 등
 - 공공임대 운영·관리에 투자를 확대(연 4.7조원, '18~'22 比 57%↑)하고, 층간소음 등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특임조직 설치('23.1)
- (소비자 보호)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발족('22.12, 舊거래분석기획단)을 통해 전세사기·집값담합 단속 등 거래 쏠단계 소비자 보호 강화*
 - * 매물(허위매물 모니터링)-계약(실거래조사)-등기(미등기 조사)-임대차(전세사기 단속)
 - 외국인 투기방지 제도정비*, 기획조사 확대(비주택거래) 병행
 - * 거래신고법 개정('22.8 既발의) →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세부규정 마련 국내 비거주 외국인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(거래신고법령 개정, '23.8)

(3)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

◆ GTX, 광역철도 확충 등을 통해 **당면한 출퇴근 불편**을 해소하고, 과감한 규제 개선 등으로 **민간 주도 미래 모빌리티 혁신 지원**

①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

① 광역 교통망 확충

□ (GTX)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 기존 사업(A·B·C 등) 적기 개통·착공 추진

- * A노선: 재정구간 종합시험운행 착수 및 민자구간 터널굴착 완료('23.下)
- B노선: 재정구간 설계 착수('23.1) 및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'23.1)
- C노선: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('23.2) 및 실시협약 체결·착공('23.下)

○ 연장·신규사업은 기획연구를 통해 최적노선(안)을 도출하고, 노선별 추진방안을 마련('23.6)하여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

- * GTX 정의·기준·지자체 역할 등 사업추진 원칙을 담은 업무처리지침 마련('23.下)

□ (수도권 광역) 대곡소사선('23.下)·별내선('24) 개통, 대장홍대선 및 위례과천선을 본격화*하는 한편, 서울5호선** 연장 등 사업화 추진

- * 대장홍대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'23.上),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조사 완료('23.下)
- ** 지자체 간 노선갈등 등으로 장기간 미추진(국가계획에 조건부 반영 중)

□ (광역버스·BRT) 출퇴근 시간 안정적이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버스 공급(135→203회)과 준공영제 노선 확대(101→153개)

○ 지방 대도시권 M버스 체계 마련('23.9) 및 노선 확대, BRT 지역 확대('22.12~, 대도시권→인구 10만 이상)를 통해 지방권 BRT 활성화

②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

□ (맞춤형 대책) 출퇴근 등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(집중관리지구)에 광역버스 증차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보완대책 마련('23.6)

- * 평택 고덕, 인천 검단, 파주 운정, 남양주 별내·진건·지금, 고양 지축·향동·원흥 등

- (수요 대응강화)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*(DRT) 범위 확대('23.9), 일반광역버스 급행노선(수요집중 정류소에서만 정차) 시범사업 추진('23.6)

* (現)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 → (改) 심야시간대, 신도시 등 확대(여객차법 시행령)

2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

1 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제공

- (택시) 전국 40여개 지역에 대해 부제해제를 검토('23.6)하고, 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·사전 확정 요금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제고

○ 낙후된 택시산업 구조(요금·면허·기사처우 등) 개선방안 마련('23.上)

- (MaaS) 철도·지하철·버스·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* 오픈('23.下)

* (Mobility as a Service, MaaS) ¹⁾다양한 이동수단 정보를 연계하여 ²⁾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, ³⁾예약·결제, ⁴⁾통합 정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

- (공항·철도서비스 혁신)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빈손여행 서비스 확대*, 코레일-항공 연계승차권 시범사업 확대(8→12개 항공사, '23.上)

* (공항) 제주·김포·김해·청주·대구 등 (철도) 부산·강릉·여수엑스포·전주·순천·목포 등

○ KTX 내 5G 와이파이 시범도입, 화장실 및 객실 리모델링 등 노후화된 고속열차 편의시설 고도화('23.下)

- (항공 마일리지) 결제방식 다양화(현금+마일리지) 등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항공권 및 정보제공 확대 검토

- (스마트톨링) 번호판 인식으로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도 무정차 결제 가능한 스마트톨링 시범사업('23) 실시 및 전국 확대('27)

- (알뜰카드⁺) 대중교통 이용량에 비례하여 교통비를 환급하는 알뜰 교통카드의 청년·저소득층* 혜택을 강화하고, 최대 지원한도** 상향

* (월 환급액) 일반 1.1만원, 청년 1.5만원, 저소득층 2.2만원 수준

** 지원횟수를 월 44→60회로 상향하여 고빈도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('23.下)

② 국민 누구나,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이동 구현

- (이동권 보장)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동권 보장 근거를 마련('23.下, 교통정책기본법 제정)하고, 최상위 계획으로 교통기본계획 수립 추진
- (사각지대 해소) 벽오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 광역교통권 내 시외버스도 비용 지원*(現 시내버스만 지원)
 - * 지자체가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해 운영을 명령하고 운영손실 일부 지원(30%)
- 기존 버스 노선을 감축하는 지역은 소형버스·택시 등 대체수단 운행
 - * 노선 효율화 등을 위한 공공형버스 운영지원(50%), 공영차고지 건설·개선 지원(30%)
- (교통약자 지원)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24시간·광역 이동 등이 가능토록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비 국비 신규 지원('23.7)
 - 노선버스 대체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('23.1),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 전용택시 활성화방안 마련('23.下)

특별교통수단



저상버스



③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

① 2027년 완전자율주행(Lv4) 시대 구현

- (인프라 구축) C-ITS*를 전국에 차질없이 구축(~'30)하고, 자율주행 전용 첨단실험단지(K-City)를 기술개발 수요에 맞춰 고도화**('23.8 착공)
 - * 자율주행 안전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해 車-車, 車-도로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
 - ** 통상적 주행환경 외 입체도로, 회전교차로 등 시험시설 추가 및 주행시험장 규모 확대
- (상용화 준비) 제작·운영·보험 제도 마련에 선제 착수(~'24)하고, 기준 마련 전 운행 등이 가능토록 성능인증제 도입('23.12, 자율차법 개정)

- (시범운영지구) 폭넓은 실증을 위해 지정 확대(20개소 이상), 다수 시·도에 걸쳐 시범운영(고속도로 등)이 가능토록 직권 지정제 도입('23.12)
- (기반 구축) 규제 특례 등을 담은 모빌리티법 제정('23.3),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('22.9)의 본격 이행을 위한 '모빌리티자동차국' 출범('22.12)

② 항공모빌리티 혁신

- (도심항공교통) '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 실증 추진('23.9), 산업 육성과 실증을 위한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담은 UAM법 제정('23.6)
 - * (1단계, '23~'24) 전남고흥 지역 실증, (2단계, '24~'25) 수도권 등 도심 실증
- (드론산업) 우수 드론 기업과 유망 활용분야를 선정하여 실증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드론산업 발전전략 3.0+ 수립
 - * (드론1.0, '17~) 제도마련, (드론2.0, '20~) 생태계조성, (드론3.0+, '23~) 우수기업 지원

③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구현

- (무인배송) 화물차·이륜차로 제한된 배송수단을 로봇·드론까지 확대('23.6, 생활물류법 개정)하고, 공동주택 내 실증 개시('23.12)
- (스마트기술) 스마트 물류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세액 공제(2%p) 적용 추진('23.6)
 -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확대
 - * 현재 대출이자 일부(0.5~2%p)를 지원 중으로, 추가 인센티브 방안 마련('23.上)
- (인프라 확충)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 물류기업이 공동 사용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준공('23.10 천안) 및 확대('23.12 제주 설계)
 - 급증하는 생활 물류 물동량 처리를 위해 물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근에 e-커머스 물류단지('23.9, 구리 예타 신청) 본격 조성

(4)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

- ◆ 법과 원칙에 기반한 **공정한 산업 질서 확립**과 **경쟁력 강화**를 통해 국토교통산업을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,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혁신
 - 이를 기반으로 **해외 건설 4대강국** 도약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

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

① 화물운송 등 물류시장 구조 개선

- (**근본적 개선**) 이해관계자·전문가가 모인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안전운임제·지입제·불법 다단계 등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('23.3)
- (**불법행위 엄단**) 문자·전화 협박, 현장 통행 방해 등으로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종사자격 취소 및 형사 처벌('23.6, 화물자동차법 개정)
 -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('23.6, 화물자동차법 개정)
- (**수급 관리**) 운송사가 운전자·차량을 직접 보유·관리하는 직영업체 신규 공급 허가 우선 추진('23.3,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)
 - 수요에 맞는 차종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공급 제한 중인 차량에 대해 차종 교체범위 완화('23.8, 대폐차 규정 개정)
 - * 시장수요에 따라 일반 화물차와 특수 차종(자동차 수송용 등)간 자유롭게 이동
- (**대체운송**) 택배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 피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배송의 법적 근거 명확화('23.12, 생활물류법 개정)
 -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('23.上)하여 철도의 대체수송 역할을 강화하고, 수송력이 50% 향상된 장대화물열차 시범운영 개시('23.9)

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

- (**노조 불법행위 근절**) 처벌 강화(등록·면허 취소)·신설(금품수수, 공사방해), 집중 점검(부처 합동조사 등),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 근본대책 마련('23.6)

○ 지방청 공정건설지원센터 내 특사경 도입 등 조직을 확충하고, 단순 신고 접수에서 단속·수사까지 역할 및 기능 확대('23.12)

○ 피해 신고 활성화 추진(익명 신고센터 설치 → 협회·정부 등 지원*, '23.1),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피해 시 손해소송 등 법률 지원(협회, '23.6)

* 정부-업계-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밀착형 감시 및 단속체계 구축 추진

□ (벌폐입찰) 공정한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택지 환수 추진('23.上)

□ (안정적 인력 수급)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 추진('23.下)

□ (분쟁해소) 건설공사 관련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하고, 효율적인 안전 처리를 위해 건설분야 분쟁위원회* 통합 운영 추진('23.下)

* 공동주택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, 건축분쟁전문위원회, 건설분쟁조정위원회

2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

1 건설·부동산산업 경쟁력 강화

□ (위기대응력 제고) 공제조합 역할 강화* 등 건설금융 안정망 구축
* 특별용자, PF 보증 등 신규 금융상품 도입 검토

○ 공사 단가에 물가상승분을 적기 반영*하기 위한 제도 개선('23.6)

* 표준시장단가 개정주기 단축(2→1년), 재료비 등에 적용하는 물가지수 변경 등

○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계획 수립('23.7)

□ (건설 고부가가치화) 시공단계에 집중된 PM을 기획·설계단계부터 활용('23.10, 건진법 개정)하고, 기술형 입찰 확대('22년13% → '23년15%) 추진

□ (리츠산업) 도심복합사업 등 리츠 투자처를 확대하고, AMC 예비인가 폐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리츠산업 활성화 지원('23.上, 부투법 발의)

2 항공산업 생태계 회복

□ (국제선 회복) 운항이 제한된 노선을 단계적 회복, 종사자 조기 복귀·심야 교통 확대 등 공항 운영 완전 정상화

- (항공사 통합) 슬롯·운수권 배분 절차 및 기준, 운임 인상통제 등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 등을 마련('23.下)하여 산업 재편 지원
- (LCC 육성) 중·장거리(EU 등) 운항 등 신규 노선 다변화가 가능하도록 부정기 운항 지원 및 운수권 배분기준 개선('23.下)

③ 국가핵심산업 육성 지원

- (배터리) 차세대 배터리 안전 기준 개발('23~'26), 배터리 리스·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독자유통 기반마련 및 이력관리 도입('23.6)
- (자동차) 튜닝·부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('23.12)하고,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·성능 시험센터 구축(경북·충남, '23.12)

③ 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

①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

- (데이터 개방) 다양한 교통 데이터를 통합·연계하고,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로 가공·분석한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('23.下)
 -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한없이 이용하는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 도입
- (스마트시티) 도시데이터를 연결·분석하여 도시관리와 서비스를 제공(예 : 확진자 역학조사지원 등)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
 - * ('18~'22) 데이터허브 개발·실증 → ('23) 전국 17개 광역시·도 보급
- (디지털트윈) 자율차·UAM 등 상용화 필수기술인 초정밀 측위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정밀도로지도·1:1,000 전자지도 구축 확대
- (KASS 서비스) 항공위성서비스(KASS)를 통해 내비·UAM·드론·스마트폰·안전 등 위치기반 서비스 정확도 개선('23.上~, 단계적 개선)
- (건설 디지털화) BIM(디지털 건설정보모델링) 확대를 위해 턴키 등 대형 공사(1천억원 이상)에 의무화('23.4),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설계 대가 인상

② 기존 물리적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

- (도로) 모빌리티 신기술(자율주행, UAM, 스마트톨링 등)을 구현해 볼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('23.6)하여 본격 구축
 - 전환 목표, 투자계획 등을 담은 디지털 도로망 종합계획 수립('23.12)
- (스마트+ 빌딩) 로봇, UAM 등이 건물 내에서 제약 없이 본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+빌딩 활성화 로드맵 마련('23.上)

④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(목표) '23년 350억불+@, 임기 내 年500억불, 해외건설 4대강국 실현
- (원팀 코리아) 민관합동 '해외건설 수주지원단*'을 통해 집중 공략할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('23.6), 단계별 수주계획 수립·진출('23.7~)
 - * 국토부 장관(단장), 기재·외교·중기·과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, 공공기관·민간기업 참여
 - ICT·원전·방산 등 他 산업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 수출 기획('23.6)
- (지역별 전략) 유망지역별 발주 전망, 수주 특성 등 고려, 전략적 진출

| | 구분 | 주요국 | 주요 진출전략 |
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중동 | 사우디, UAE, 쿠웨이트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상 경제외교 확대 및 성과 활용 ■ 신재생 에너지, 원전 등 탈석유 프로젝트 진출 공략 |
| 2 | 아시아 |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도시, 스마트시티, 산단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공략 ■ 무상원조(ODA) 등 원조사업을 건설수주로 연계 |
| 3 | 신시장 | 칠레, 페루, 호주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중남미) G2G 협력 강화, 중남미권역 MDB 공동참여 추진 등 ■ (유럽·미국·호주) 현지기업 협력 강화, 패키지 중심 수출 등 |

- (고부가 분야 진출)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(KIND)의 자본금 한도를 상향(5천억원 → 2조원)하여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(PPP) 진출 확대
- (기업 지원) 통합정보시스템*('23.7) 및 지원센터('23.3)를 가동하여 발주·입찰정보 제공, 금융·법률 컨설팅, 애로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
 - * 해건협, 엔지니어링협, KIND, 코트라, LH 등에 분산된 발주·사업정보 등 통합 제공
 - 국토교통 ODA 강화('22. 281억원 → '23. 307억원) 등 금융지원 확대
 - UAM('23.下)·수소 항공기 인증기준('23~'27) 마련, MRO 해외물량 국내 전환 및 기업지원 근거마련('23.下, 항공사업법 개정) 등 해외 진출 지원

(5) 안전하고,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

◆ **자율과 책임**에 기반한 안전체계를 형성하여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고, 혼잡·노후SOC, 재해 등 **새로운 안전위협 요인**에도 대응 강화

1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

* 교통사고 사망자 수(명) : ('21) 2,916 → ('22^{추정}) 2,767 → ('23^{목표}) 2,400

1 사고 취약 요인 집중 관리

- **(철도)** 철도사고 근절을 위해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(심층진단 용역, ~'23.上)하여 국가사무인 관제·선로 유지보수 기능 재정립 추진
 -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(100명 위촉)을 통해 차량·시설·운영 등 사고 취약요인*을 상시 점검·개선하고, 필요 시 제도개선 추진
 - * 선로 분기부, 차량정비·시설유지보수 관리실태, 안전수칙·작업기준 위반 등
 - 철도시설 유지보수* 및 차량정리** 기계화·자동화를 통해 사고 요인을 최소화하고,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도모
 - * 레일과 침목을 자동 결합·분리하는 레일 자동체결장치(26대) 등 스마트 장비 도입
 - ** 무선입환시스템 도입(7개역), 선로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교체(20개역) 등
- **(보행자 최우선)** 우회전 차량 사고 다발구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('23.1,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^{경찰청}),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추진
 - 스쿨존을 이동하는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및 차량의 위치, 이동 정보를 서로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지능형교통체계 개발
- **(화물차)** 적재 고정도구(판스프링 등) 이탈 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, 불법 개조 시 형사 처벌 규정 신설('23.9, 화물자동차법 개정)
- **(방음터널)** 전국 현황 및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('22.12.30~) 실시,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방음터널 내화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

② 新위험요인 대응 강화

- (혼잡 관리) 「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방안」을 마련('23.3)하고, 교통시설에 적용되는 혼잡기준·대응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 수립('23.9)
 - 입석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(135회→203회) 및 2층 전기버스(70석) 대폭 확충(20대→40대), 출퇴근 시간 좌석 사전예약제 도입 등 추진
- (항공) 항공안전투자 우수항공사에 인센티브*를 부여하고, 운항회복 기간 중 월단위 항공사 점진 강화 및 헬기사고 예방 집중관리
 - *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'항공안전투자 실적' 반영 검토
- (전기차) 전기차 충전소 위치 등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기준, 전기차 무게 등을 고려한 기계식 주차장 기준 마련('23.12, 주차장법령)
- (PM) 보행 안전이 중요한 구역(예 : 어린이 보호구역, 횡단보도 인근 등)은 PM 주차 원칙적 금지, 지정 장소에만 주차 허용('23.6, PM법 제정)
- (커넥티드카) 차내 SW 적용 확대, 통신기능 탑재 등에 대비하여 SW 업데이트 및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마련('23.12, 자동차관리법)

②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제고

① 건설사고 사망자 10% 이상 감축('22. 390명 → '23. 350명^{목표})

- (안전 혁신) '예방-대비-대응-복구' 쏠단계에 자율적·혁신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「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」 수립('23.10)
 - * (現) 불균등한 책임소재, 인력·서류중심 대비, 보고서 중심 사고처리, 타율적 규제
 - (改) 대·중소기업 얼라이언스, 스마트 현장관리, 골든타임내 사고수습, 현장 자율형 책임
- (스마트 관리) 스마트 안전 통합관계 시스템을 구축(R&D, ~'27)하고,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(25개소 → 50개소)
- (기자재 관리)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레미콘 공장 인증제 및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전 승인제 도입('23.12)

- (현장 관리) 형식적 서류작업보다 안전 활동에 집중토록 현장 서류 간소화('23.4)하고, 취약현장 점검 대상을 확대(150→240개소)하고,
 -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,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1일 작업량 기반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고도화('23.10)

② 노후 SOC 안전관리 강화

- (노후 시설 관리) 총조사* 결과(~'23.12)를 토대로 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, 보장시기·비용 등 시설별 최적 관리방안 마련('23.12)
 - * 총조사('20.5~'23.12, 국토안전관리원) 15종 6.5만여 개, 41만km 시설물 정보 조사
- (관리 강화) '23년 중 노후 도로 유지보수 및 철도 선로(121km) 개량, 노후 철도역사(48개) 증개축 등을 통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

③ 재해 대응 역량 강화

①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재해대응력 강화

- (재해취약 건축물)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커뮤니티시설로 전환하고, 기존 반지하주택을 재건축하는 신축 매입약정 추진('23~'27, 약 5천호)
 - 매입이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(지자체 협업)하고, 재정비(쪽방촌 등), 신축 인·허가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이행
 - 재해취약주택 등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토록 지원 대상 대폭 확대('22 공공 0.7만호 → '23 공공 1만+민간 0.5만호)
- (건축물) 침수우려지역 내 건물 물막이설비 개선방안 마련('23.上),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('23.下, 건축법 개정)
- (도시공간) 재난·재해 위험정도를 등급화(100m 격자단위)하여 도시정비 솔루션을 지원하는 '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' 구축('23.12)

② 친환경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

- (교통) 보조금 등을 통해 택배, 버스·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우선 유도하고, 고속도로 충전인프라 확충(‘23년 전기차 487기, 수소차 12기 준공)
- (건축)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대상 확대(現 1천㎡→5백㎡), 기존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대상 확대(경로당, 도서관 등 확대)
- (탄소중립도시) 도시단위 탄소배출량 분석을 위한 탄소공간지도 서비스 개시(‘23.6),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마련(국토부·환경부 공동)
 - 친환경 도시에너지원 확대를 위해 수소도시 6개소 신규 추진(‘23)

4 생활친화형 인프라 조성

- (용산공원)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거쳐 임시개방을 추진하고, 주변 지역 개발구상을 담은 용산시대 전략 마련(‘23.下, 기본계획 변경)
- (생활친화 건축)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,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설치 허용 등 규제완화(‘23.上, 건축법령 개정)
- (공향소음) 주민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원방식 개편(시설→현금지원)
* 법 개정안 발의(‘23.上), 방음·냉방시설 설치 → 현금 지급(건강관리, 문화생활 등)
- (법인차) 무분별한 사적 사용을 방지 위해 전용번호판 도입(‘23.6)

< 법인자동차 전용번호판 예시 >



- (공동주택 환경 개선)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 활성화(‘23년 최대 5천가구),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(100→50세대) 등 관리비 투명화
- (도로개선) 국도 상 자전거도로 2단계 기본계획 수립(‘23.6),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한 도로 설계기준 마련(‘23.10)